

## 관세청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기업 선정 공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프로그램 「혁신 프리미어 1000」의 관세행정 분야 기업지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관세청장

### 1. 사업 목적

-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

### 2. 지원 대상

- (필수)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
  - (우대)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 각 품목은 [별표 1]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품목 리스트와 [별표 2] 「5대 중점전략분야」 참조

### 3.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 4. 지원 내용 및 특전 사항

- (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전용 상품을 신설하는 등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 지원

정책금융기관	지원 내용
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용상품 사용시 대출 금리 최대 <math>\Delta 0.9\%p</math>(원화 기준) 감면</li><li>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li><li>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li></ul>

정책금융기관	지원 내용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 금리 최대 △1.0%p 감면</li> <li>▶ 대출시 수출 자금의 경우 수출실적의 100% 이내로 한도 확대 (기존 50~90% → 선정기업에 한해 100%로 확대)</li> <li>▶ 보증시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li> </ul>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 금리 최대 △1.3%p 감면</li> <li>▶ 대출시 시설 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90%로 한도 확대 (기존 80% → 선정기업에 한해 90%로 확대)</li> </ul>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95% 확대 (기존 평균 85%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은 95%로 확대)</li> <li>▶ 기업별 보증한도 최고 150억원으로 적용 (기존 최고한도 100억원 → 선정기업에 한해 최고한도 150억원으로 확대)</li> <li>▶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4 ~ 1/2로 확대 (기존 추정 매출액의 1/6 ~ 1/3 → 선정기업에 한해 추정 매출액의 1/4 ~ 1/2 확대) ※ 5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li> </ul>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95% 확대 (기존 평균 85% 수준 → 선정기업에 한해 95%로 확대)</li> <li>▶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200억원 적용 (기존 100억원 수준 → 선정기업에 한해 200억원으로 확대)</li> <li>▶ 3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2로 확대 (기존 추정 매출액의 1/4 ~ 1/3 → 선정기업에 한해 추정 매출액의 1/2 확대) ※ 5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li> </ul>

○ (비금융 지원) 6개 정책금융기관 전체 프로그램 및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각 참여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선정기업에 특전 부여 예정

정책금융지원관	지원 내용
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KDB NextRound)</b> 스타트업-VC 연결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라운드(매주 3회), 스페셜 라운드(연 10회 내외)</li> </ul> </li> </ul> </li> <li>▶ 스타트업 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NextRise)</b> 1:1 밋업, 부스전시 등 글로벌 스타트업 Fair (연 1회)</li> </ul> </li> </ul>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BK 컨설팅)</b>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 기업승계, 세무·회계, 경영, 인사·조직, 노무, ESG 등</li> </ul> </li> </ul> </li> <li>▶ 해외판로 개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BK Trade Club)</b>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거래처 발굴 희망 기업에 글로벌 제휴은행의 기업고객과 거래 매칭</li> </ul> </li> </ul>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판로 개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외사업개발 지원 플랫폼)</b> 해외사업 발굴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사 및 입찰 관련 용역비용 지원</li> </ul> </li> </ul>

정책금융지원관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유치</li> <li>- (U-CONNECT)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li> <li>▶ 컨설팅</li> <li>- (기술컨설팅) 권여별 공향컨설팅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 지원</li> </ul>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li> <li>- (기술경영 컨설팅)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개선</li> </ul>
성장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유치</li> <li>- (핀테크워크) Reverse IR,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li> <li>- (혁신성장/뉴딜 투자설명회) 혁신성장 뉴딜펀드 위탁 운용사와 기업 매칭</li> </ul>

- ※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담당기관이 기업은행으로 배정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예정
- 「혁신 프리미어 1000」 최종 선정기업은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우대 선정, YES FTA 전문교육(무료), 공익관세사의 통관상담 서비스 등 제공
-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 \* 단,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의 각 지원사업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정책금융지원반의 최종 선정 후 「혁신 프리미어 1000」 관세 분야 확인증 발급

## 5. 지원 기간

- 선정 시 ~ 익년 말 (금번 선정시, '26년말까지 지원)
- ※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6. 신청 자격 등

### □ 신청 자격

- (공통 요건) 혁신성·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sup>1)</sup>·중견기업<sup>2)</sup>으로서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적극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구분	내용	비고
기본요건	▶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의 240개 품목 영위 중인 중소·중견 기업 ※ [별표 1]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품목 목록 참조	필수
	▶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 [별표 2] 「5대 중점전략분야」 품목 참조	우대
혁신성	▶ 최근 2년 이내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적격 투자기관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 (한국 벤처투자, 은행, 신·기보 등)	최소 1개 이상 해당
성장성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관세행정 분야	▶ [별표 3] 관세행정 분야 세부기준 참조 ※ ❶ 수출입제조·물류 보세산업 분야, ❷ 수출입 통관·조사·감시 분야, ❸ FTA활용 분야, ❹ 수출입안전관리 분야	

○ (소극 요건)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 점검\* 후 해당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재무적 결격 요건 유무는 정책금융종합지원반에서 판단하여 선정된 부처에 통보 예정

검토 주체	결격사유 점검 항목
각 부처	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회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최근 2년간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 (단, 질서벌 처벌은 제외)
	④ 국세·관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정책금융 종합지원반	①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파산, 부도,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경우
	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 제외)
	④ 최근 회계연도(2023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⑤ 최근 회계연도(2023년)상 3년 평균 매출 증감 △10% 이상인 기업
	⑥ 최근 회계연도(2023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⑤,⑥ 항목에 해당되나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 이 경우 투자 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 7. 선정 방법

### □ 평가 방법

- (요건 심사) 제출 서류, 신청 자격 검토 등
- (서면 평가) 혁신성,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사항	배점
보유 기술등 혁신성 (50)	연구개발 인프라	1) 기술 개발 조직 및 개발 인력의 우수성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
	연구개발 역량	1)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3)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미래 성장 가능성 (50)	기업 성장 추이	1) 최근 3년간 매출액·수출액·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15
	최근 투자 실적과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1) 최근 3년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2) 성장을 위한 투자 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3)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4)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20
	핵심 인재 확보 및 인재 육성 적극성	1)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2) 미래 핵심 인재 확보 및 고용 창출 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3) 핵심 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5
<b>합 계</b>			<b>100</b>

### □ 최종 선정

- 요건 심사 및 서면 평가 결과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의 결격사유 심사 후 결정
-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의 재무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결과 70점 이상이어도 “선정 제외”로 분류

## 8. 신청 방법

### □ 접수 절차

구 분	내 용
접수 기간	▶ 2025. 2. 17. 09시 ~ 2. 28. 17시
문의 및 접수처	▶ 신청기업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지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11번 참조) * 접수 후 접수 결과 안내메일 순차적 회신 예정, 미회신시 문의 및 접수처로 확인 전화 필요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건은 심사 제외)

구 분	내 용
서식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관세청FTA포털에서 공고일로부터 서식 교부</li> <li>* 관세청(<a href="https://www.customs.go.kr">https://www.customs.go.kr</a>)</li> <li>* 관세청FTA포털(<a href="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a>)</li> </ul>
접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된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li> <li>* '신청서', '혁신성장전략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li> <li>* 증빙용 서류는 PDF 파일, 스캔본 파일로 제출(증빙 파일 오류 확인 必)</li> <li>* 모든 제출 서류는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로 송부(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li> <li>▶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li> </ul>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마감일 17:00 초과 신청건은 미접수 처리</li> <li>▶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선정 진행 일정, 결과 발표 등의 선정 절차 안내가 제공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정보 입력 필요</li> <li>▶ 필요시 추가 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li> <li>▶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해당 사업 관련 기관에만 공개 가능</li> <li>▶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li> </ul>

#### □ 제출 서류

서류 번호	서류 명	파일종류	수량
(1)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	hwp파일, PDF파일	각 1부
(2)	혁신성장 전략서	hwp파일, PDF파일	각 1부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hwp파일, PDF파일	각 1부
(4)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hwp파일, PDF파일	각 1부
(5)	최근 4개년도('20~'2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PDF파일, 스캔본	각 1부
(6)	국세·관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은 법인명으로 출력)	PDF파일, 스캔본	각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파일명에 서류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나열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9. 선정 후 지원신청 절차

- 선정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 신청서를 접수(수시)
  - \* 온라인(종합지원반 홈페이지 : [www.newgi.org](http://www.newgi.org) 접속 → 「혁신 프리미어 1000」 클릭  
오프라인(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 10. 기타 유의사항

-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 결정
- 선정 후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 필요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 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

## 11. 문의 및 접수처

- (관세청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청 관련 문의 및 접수

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 510-1371~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 620-6951~6957	busansupport@korea.kr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 452-3644~3645	incheo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 230-5181~5184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 975-8192~8197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 8054-7046	ptfta@korea.kr

- \* 신청기업은 본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 및 접수

- (정책금융기관) 금융·비금융 지원 내용 문의 및 상담

산업은행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책금융기관 (종합지원반)	02-787-6916	jyohkdb@kdb.co.kr
	02-787-6917	kaitou@kdb.co.kr